

## 경기교통공사 제3대 사장, 비상임감사 및 노동이사 공개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경기교통공사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갖춘 제3대 사장, 비상임감사 및 노동이사를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경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 사장 1명, 비상임감사 1명, 노동이사 1명
2. 임용기간 : 3년 (1년 단위 연임가능)
3.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노동이사 직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직위	응시자격
사장	<p>&lt;포괄적 요건&gt;</p> <p>다음 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직의 경영경험과 비전 제시 및 추진력 등 경영인으로서 역량을 갖춘 자</li><li>○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자</li><li>○ 대중교통 등 교통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을 보유한 자</li><li>○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대중교통시설 ·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등 교통전문가</li></ul> <p>&lt;구체적 요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li><li>○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li><li>○ 교통계획 및 설계, 교통영향평가, 교통안전 연구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li></ul>

직위	응시자격
	<p>에서 상임임원 3년 이상 또는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대중교통 등 교통관련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li> <li>○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대중교통시설 ·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등 교통관계 기관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li> <li>○ 교통, 경영, 행정 등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명시된 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li> </ul>
노동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일에 경기교통공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선거권자의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li> </ul>
비상임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li> <li>○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을 갖춘 자</li> <li>○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비상임감사 직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li> </ul>

※ 공모직위(사장, 노동이사, 비상임감사) 중복지원 불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4. 직무수행요건(심사기준)

##### 가. 사장 직무수행 요건

<p>기본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공·사 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및 능력</li> <li>○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li> <li>○ 선도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li> </ul> </li> <li>□ 경영비전제시 및 실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조직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실천역량</li> <li>○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li> <li>○ 경영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li> </ul> </li> <li>□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li> <li>○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li> <li>○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li> </ul> </li> </ul>
<p>고유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등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관련 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li> <li>○ 교통관련 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등 전문적인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li> </ul> </li> <li>□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li> <li>○ 도민·도의회·언론·시민단체 등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능력</li> </ul> </li> </ul>

##### 나. 비상임감사 직무수행 요건

<p>기본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로서의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로서의 국가관,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과 실천능력</li> <li>○ 지방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li> </ul> </li> <li>□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혁신의 의지와 실천역량</li> <li>○ 조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역량</li> </ul> </li> </ul>
<p>고유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업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li> <li>○ 청렴도 개선, 감사기능 활성화 및 공사 발전유도 전략</li> </ul> </li> <li>□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양</li> <li>○ 공사업무에 대한 발전적 비전 제시 역량</li> </ul> </li> <li>□ 청렴경영·감사분야의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개선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 역량</li> <li>○ 청렴 경영 문화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고 능력</li> </ul> </li> </ul>

## 다. 노동이사 직무수행 요건

기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li> <li>○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li> </ul> </li> <li>□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li> <li>○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li> </ul> </li> <li>□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li> <li>○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li> </ul> </li> </ul>
고유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li> <li>○ 관련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li> </ul> </li> <li>□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li> <li>○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li> </ul> </li> </ul>

## 5.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사장】

- 임기 3년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비상임감사】

- 임기 3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
- 보수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비를 지급하며,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이사】

- 임기 3년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가능)
- 직책에 따른 급여 및 업무수행비는 없으며,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할 수 있음

##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 2.(금) ~ 2026. 1. 8.(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방문 및 등기우편: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3층  
경기교통공사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 이메일 접수: recruit@gtrans.or.kr(접수 후 담당자 확인 필수)
  - ※ 방문접수의 경우 주말 제외,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 전 도착분에 한함

##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 노동이사의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입후보자 추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중심으로 경영비전을 포함하여 임용지원직위에 대한 추진계획, 전략 등을 A4용지 4매 내외로 기술하거나, 4매 초과인 경우에는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 직무수행계획서는 사장, 노동이사만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2차(면접심사)

- 사장 응모자 중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후 후보자 2배수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 비상임감사, 노동이사 응모자는 면접시험 생략 가능(1차 시험 합격자 중 후보자 2배수 이상을 도지사에게 추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라. 노동이사 직위의 경우 공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동이사 후보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 후, 공사 내부 선거 절차를 통해 후보자 2명을 선출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8. 기타사항

가.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공모결과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라. 경기교통공사는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 요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마. 지원서 제출 이후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바. 노동이사는 관계법령,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며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031-860-1522, e-mail : recruit@gtrans.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경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